

##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

고양소방서의 화재안전조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
2024. 5. 14.

고 양 소 방 서 장

- 조사기간 : 2024.02.01. ~ 04.30.
- 조사대상 : 총 1개(세부내역 별첨)
- 조사인원 : 소방서 화재안전조사팀 2인
- 조사사유 : 자동화재속보설비 반복대상 화재안전조사
- 조사방법 :  종합조사,  부분조사
- 주요 조사내용
1.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
  2. 법 제24조, 제25조,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
  3.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  4.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·통보·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
  5. 「소방기본법」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
  7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 9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, 방화구획(防火區劃)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
  10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방염(防炎)에 관한 사항
  11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
  12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, 제9조, 제9조의2, 제10조,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 13.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5조, 제6조, 제14조,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 14. 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, 제11조, 제12조, 제14조,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
  15.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▷ 화재안전조사는 소방관서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 시행될 수 있음
- ▷ 위의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고양소방서 홈페이지(<https://119.gg.go.kr/goyang>)에 30일 이상 공개될 수 있으며, 조사결과 공개에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문의전화 : 고양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☎ 031-931-0392

## 화재안전조사 대상

210mm × 297mm [백상지(80g/m<sup>2</sup>) 또는 중질지(80g/m<sup>2</sup>)]